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input type="checkbox"/>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